

- 부산광역시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1. 21-----사하구청장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1. 22
다. 상 정 일 자 : 제133회 사하구의회(제2차 정례회)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12.5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)

가. 제안이유

-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.
- 장소 협소 등으로 2002. 10월 개관이후 대관 실적이 전무한 전시 관리동 2층 취미교실(43.56㎡)대관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1의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소공연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함 (안 별표)
- 관리동 취미교실(43.56㎡)대관 폐지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제130조」
- 입법예고 : 2005. 10. 25 ~ 11. 14(20일간, 별도의견 없음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이 완공됨에 따른 회관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 되어 회관 각공연장 또는 교실의 사용범위와 신설되는 소강당의 사용료를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
- 제4조 제1호중 취미교실을 삭제하고, 대신 소공연장을 추가하여, 소공연장의 사용료를 경우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인데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